

협약서

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과 (주)이우티이씨(이하 '양기관'이라 한다)는 이 협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이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협력을 추진하는데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지하탐지 및 경계표지 기술을 비롯한 지적 측량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고 관련 기술 동향과 정보, 데이터 및 장비 공유 등 연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인적·물적 교류) 양 기관은 실무실험 지원, 인력 지원, 장비 및 데이터 공유, 공동 연구 등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 3조 (인력지원) 양 기관은 업무 수행이나 연구에 필요한 경우 인력을 요청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 4조 (장비 및 데이터 공유와 제공) 양 기관은 업무 수행이나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장비, 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거나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한다.

제 5조 (공동연구) ① 양 기관은 협의에 의해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공동 연구의 형태, 시기, 기간 내용,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6조 (비용 등) 양 기관의 교류·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7조 (비밀보장) 양 기관이 교류·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학술·업무 기타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, 본 협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 이 의무는 본 협약 만료, 해제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 단,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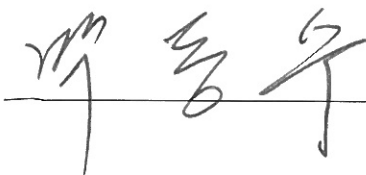
제8조 (세부사항 협의)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양 기관이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조 (협정기간) 이 협정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양 기관에서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이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10월 14일

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
원장 박동수



(주) 이우티이씨
대표이사 김평

